

2019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65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- 최초지원사업장(동일사업장 판단기준*에 따라 최초지원 판단) * 개인사업장은 생년월일 및 성별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와 개인과 법인은 장소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원사업장으로 판단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5점	- 전년도 50인미만 전업종의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소업종의 사고사망만인율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※ 전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는 11월 확정통계 적용 ▶ 2배 이상 15점 ▶ 1.5~2배미만 10점 ▶ 1~1.5배미만 5점 ▶ 1배미만 0점
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0점	-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의 재해율 재해율 순위를 10개 전 소업종 단위로 그룹화 하여 1점씩 차감) ※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50인 미만 전년도 11월 확정통계 사용
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- 선정 당시 ERP공식통계 적용
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이하)	10점	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* 장년·청년·외국인근로자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로 확인 * 장년근로자(63년생 이전), 외국인등록번호(성별 5,6), 청년(89년생 이후) *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
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지게차(좌 입식)	5점	- 해당설비 사진제출 시 인정 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* 현장확인 시 허위일 경우 대상선정 취소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15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대상, 강소기업, 일학습병행제로 인정 받은 사업장	10점	- 인정서 제출 시 인정(인정유효기간 내)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(기술지원 실시 사업장)	5점	- '18~19년 공생협력 참여업체의 협력업체 중 기술지원 사업장
■ 지역별 자율 항목	20점	
⑨ 재해다발사업장	10점	- 최근 3년간(16~18년) 재해 1건당 2점 * 선정 당시 ERP공식통계 적용
⑩ 신규설립사업장	10점	- 산재보험성립일 2018.1.1.이후 사업장
■ 가점항목(고용·산업위기지역)	+10점	- 18년 고용산업 위기지역 : 거제, 통영, 고성, 창원진해구 * 19년 고용부로부터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
계	100점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가점항목→공통항목(①→⑥)→우수항목(⑦→⑧)→자율항목 (⑨→⑩)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